

바.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등 완화(별표5)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및 혼인요건이 완화된 만큼, 산단형 행복주택도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120%로 하고, 혼인요건을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함.

사. 동일 공급대상 재청약 요건 완화(별표5)

행복주택 입주자가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여 연접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세대원수가 증가·감소되는 경우 등은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blisskim@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② (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③ (주)세종이앤씨(민경남)

나. 전화번호 : ① 042-480-7114 ② 02-2049-5114 ③ 042-719-886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9호

3. 명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접시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접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21.01.3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창업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 요건과 보통주 전환 요건,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